의 안 번 호 제3309호

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 배강민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12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
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
2.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,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,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 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지원 사업 및 지원신청 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·기능 및 사무의 위탁 (안 제7조 ~ 제8조)
- 마. 지도·감독 및 홍보 (안 제9조 ~ 제10조)
- 바. 포상 및 지원절차 등 (안 제11조 ~ 제12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환경을 향 상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음식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김포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- 10. 주문사항 : 없음
- 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